

「평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
심 사 보 고 서
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「평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1. 6. 10(금) 평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11. 6. 20(월)

다. 상정일자 : 2011. 6. 20(월)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재무과장 최찬웅)

○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
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.

○ 정기분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항 마련

-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하는 경우
: 고지서 1장당 150원
-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
: 고지서 1장당 300원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92조의 2항에서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해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.
- 주요 내용을 보면,
 - 주민세, 재산세,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150원을
 -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씩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임.
- 지방세 납부율을 향상시키고 지방세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시행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근거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.